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03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 송재봉·서영교·김남근

이병진 • 이수진 • 황명선

김우영 · 김남희 · 박정현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피하려는"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나누 어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5조제1항제1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③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4
과 관련하여 수탁 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u>피하</u>	<u>피하기</u>
<u>려는</u>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다.	<u>나에 해당하는</u>
<u><신 설></u>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위
	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
	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나누어 수탁・위
	<u>탁거래를 하는 행위</u>
<u><신 설></u>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
	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
	<u>도하는 행위</u>
<u><신 설></u>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
	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	25	조(준	수시)항)	1	위틱	탁기	업.	슨
	수	탁기역	업에	물	품등	.의	제	조	를
	위기	탁할	때	다음	- 각	호	의	행.	위
	를	하여	서는	= 아	니 된	된다.			

- 1. ~ 13의2. (생 략)
-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 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 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 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나.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제25조(준수사항) ①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
동을 요청하는 행위
<u> </u>